

경기영상위원회 촬영지원 규정

제1조 (목적)

경기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기도에서의 영상물제작을 위한 합리적 환경 개선 및 효율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영상물촬영 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경기도의 영상산업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구이다. 위원회는 영상물 제작 단체 및 개인(이하 "신청인")과 촬영장소 관할권자 간의 매개 및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영상물 창작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경기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촬영 여건을 조성 영상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본 규칙은 신청인이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 장소섭외 지원

"장소섭외 지원"이라 함은 촬영 장소 허가를 위한 장소물색, 장소정보파악, 섭외를 위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2. 로케이션촬영

"로케이션촬영"이라 함은, 촬영스튜디오 등 영상물 촬영 전용공간 이외에서 진행되는, 촬영과 관련 없는 3자가 그 행위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촬영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1. 영상위원회가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경기도 내 장소섭외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 지원
- 나. 경기도 내 로케이션 촬영지 촬영 허가 지원
- 다. 기타 촬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가 촬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장소섭외 지원 사항

- 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로케이션의 사진 자료 및 기본 정보 제공
- 나. 별도 요청이 있을 때 오프라인을 통한 추가 자료 및 정보 제공
- 다. 필요 시 동행 답사

※ 단, 촬영 허가 등을 위해 영상위원회 담당자의 동행 및 협의 배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로케이션촬영 지원 사항

- 가. 촬영에 필요한 허가 사항 지원
 - 나. 촬영에 필요한 공공 장비, 인력 등의 지원
 - 다. 주차지원
 - 라. 영상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대 시민 홍보지원
 - 마. 외국영화가 국내에서 촬영하는 경우, 교통 숙박 등 현지촬영에 필요한 편의 주선
 - 바. 기타 촬영을 위해 영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 신청인과 위원회간 협의 후 지원내용 및 범위 결정
지원 여부 및 지원의 범위와 규모는 신청된 영상물의 제반 제작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상위원회가 결정함.

제4조 (지원대상)

영상위원회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국내외의 모든 영상제작물

제5조 (제한사항)

- 1. 영상위원회에 제공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영상위는 지원목적에 해당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무단 배포할 수 없다.
- 2. 사적 소유물 및 소유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제6조 (신청인의 신청절차)

- 1. 장소섭외 지원
 - 가. 위원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의한 웹사이트상의 자료 이용
 - 나. 오프라인상 추가지원 요청 시 별도양식의 로케이션촬영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접 수
 - 1) 첨부서류 : 지원신청내용별세부적요(이하"세부적요") 각 1부, 시나리오 1부, 장면구분표 1부
 - 2) 접수기한: 촬영지 답사 예정일 2주전
- 2. 로케이션촬영 지원
 - 가. 신청서 접수
 - 1) 첨부서류 : 세부적요 각 1부, 시나리오 1부, 제작기획서 1부, 장면구분표 1부, 스텝 연락처 1부, 촬영내용 콘티 1부, (학생영화의 경우)학생증 사본 1부
 - ① 필수서류: 신청서 1부, 시나리오 1부, 장면구분표 1부

② 추가서류 : 지원신청 별 세부적요 각 1부, 제작기획서 1부, 스탭연 락처 각 1부, 콘티 1부
※ 필수서류 접수시 신청 작품이 접수된 것으로 하며, 영상위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 2) 접수기한: 촬영 예정일 2주전. 단, 접수 일은 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짜로 한다.
- 3) 참고사항: 신청내용에 따라 첨부서류 및 접수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지원사항별 세칙" 참조할 것,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신청인과 위원회 간 협의 후 지원내용 및 범위 결정. 지원여부 및 지원의 범위와 규모는 신청된 제작 여건의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함.

3. 접수방법

지원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각 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팩스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제7조 (신청인의 의무)

1.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야기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위원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가. 기한준수 및 서류제출 성실의 의무

- 1)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위원회는 서류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 2) 신청인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축소된 내용으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
- 3) 변동사실 신속고지의 의무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당시 제출한 사항(촬영장소, 촬영장면의 종류, 일정 및 인원 장비수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 취소할 경우 촬영지 관할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는 위원회에, 촬영지 확정 후에는 위원회와 관할처에 즉시 사실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나. 촬영취소 및 연기

신청인은 촬영일정의 변동으로 인해 허가된 촬영 일에 촬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최소 2일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촬영 및 재허가를 위한 기간은 관할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다. 촬영지 보호의 의무

신청인은 촬영 중 발생한 오물 및 쓰레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형되거나 훼손된 건물 및 기물 등을 원상 복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촬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장소 내 시설물을 변형하거나 철거할 경우 영상위에 원상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와 훼손과 관련하여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

라. 시민불편 최소화 및 사생활 보호의 의무

- 1) 신청인은 촬영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3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충분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신청인은 사전 동의 없이 사유재산을 촬영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없다.
- 3)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서약서 내지 각서 제출, 혹은 적절한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신청인의 협조사항)

1. 신청인은 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촬영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직원의 입회나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영상물촬영 등에 협조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가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이용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위원회의 데이터취합을 위해 신청대상영상물의 포스터, 리플렛, 보도자료, 현장사진, 예고편, 메이킹 필름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위원회의 지원과 관할기관의 협조로 촬영을 진행했을 경우, 이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영상물 혹은 홍보물 상에 나타내야 한다.

제9조 (지원중지)

1. 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원회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2회 이상 시정 요청 공문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촬영지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내용과 달리 촬영지 훼손 및 이미지 실추의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할 경우 기관의 요청에 따라 촬영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책임)

신청인의 위원회에 대한 촬영지원신청은 본 규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원회의 지원으로 촬영되는 영화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